



축산물등급판정기준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1-38호

농림부고시 제1999-64('99.9.28)호의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일
농 립 부 장 관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중개정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량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육량지수} = 65.834 - (0.393 \times \text{등지방두께(mm)}) + (0.088 \times \text{배위장근단면적(cm²)}) - (0.008 \times \text{도체중량(kg)})$$

(다만, 육용풍종(肉用品種)의 소도체는 2.01을 가산하여 육량기준지수로 한다)

제4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숙도 :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8, 9인 경우

제5조 제1호내지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퍽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2.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3. 부분폐기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4.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별표2를 별자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성숙도 구분 기준

번호	급 격 의 특 성			
	홍추육	오추육	전추육	갈비뼈
1	홍추의 가시돌기는 매우 붉은색이고 다공성조직이 드러누며 연골이 선명하고 뚜렷함	오추육의 연골이 선명하고 뚜렷함	전추의 각 뼈들의 구분이 명확하고 연골은 선명하고 뚜렷함	갈비뼈는 붉고 연하며 둥글
2	가시돌기는 붉고 다공성조직이 부드러우며 연골은 골화가 시작됨	골화가 시작 되었으나 연골이 약간 있음	전추 각뼈들의 구분이 일부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 있음	붉고 약간 연하며 약간 넓어짐
3	가시돌기는 붉고 연골은 1/5 정도가 골화됨.	상당히 골화되었고 연골이 조금 있음	전추의 각 뼈들의 구분이 없어지고 흔적만 보임.	붉은색을 조금 잃어 버리고 약간 넓고 평평함
4	가시돌기는 약간 붉고 연골은 2/5정도가 골화되었으나 연골의 윤곽은 뚜렷함.	대부분 골화되었고 연골이 거의 없으나 골화된 연골 조직의 형태는 뚜렷함	전추의 각 뼈들의 구분 흔적도 흐리게 보임.	붉은색을 많이 잃어 버리고 약간 넓고 평평함
5	가시돌기는 약간 붉고 연골은 3/5정도가 골화되었으나 연골의 윤곽은 뚜렷함.	완전히 골화되었고 연골이 거의 없으나 골화된 조직이 뚜렷함.	전추 구분이 없어 완전히 융합됨	약간 넓고 평평하여 조금 단단함
6	가시돌기는 약간 붉고 연골은 4/5정도가 골화되었으나 연골의 윤곽은 뚜렷함.	완전히 골화되었고 골화된 연골 조직의 형태는 흐리게 보임.	상 동	커어지고 넓고 평평함
7	가시돌기는 붉은색이 거의 없고 연골은 완전히 골화되었으나, 가시돌기와 구분 흔적이 남아 있음	완전히 골화되었고 연골은 골화된 형태마저 보이지 않음.	상 동	최고 넓고 평평함
8	가시돌기는 붉은색이 없고, 연골은 완전히 골화되어 가시돌기와 구분 흔적이 없음	완전히 골화됨	상 동	상 동
9	완전히 골화되어 연골 조직의 형태마저 구분이 불가능하고, 가시돌기와 구분이 없음	상 동	상 동	상 동

□ 개정 등급기준 해설

1. 소도체의 성숙도 기준 완화

가. 성숙도의 기준이란

가축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섬유가 굵어지고 근섬유막이 두꺼워짐에 따라 고기가 잘겨져 품질이 떨어지므로 이를 육질등급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숙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나. 종전 성숙도 기준의 문제점

정부에서는 한우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암소에 대하여 다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번식우사육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성숙도 기준으로 인해 암소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조기 도축하는 경향이 있어 왔으며, 이것이 한우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 받아 왔다.

다. 개정내용

종전에는 출하한 암소가 송아지를 3산한 경우 성숙도 3번(개정기준 7번 수준)으로 판정이 됨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1등급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 기준은 송아지를 3산하였어도 사양관리를 잘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성숙도기준 8번이나 9번을 받은 경우에만 등급을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도체의 등외등급기준 현실화

가. 종전 등외등급기준의 문제점

종전에는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도체라도 성숙도기준 3번에 해당할 경우에만 등외판정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성숙도기준 3번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외관 및 육질이 극히 불량한 도체가 출현하고 있어 소도체의 등외등급기준을 현실화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개정내용

개정 성숙도기준 8, 9번에 해당되지 않아도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에 대하여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는 등외등급판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로 개정하였다.